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805호, 2025. 3. 18. 공포, 2025. 9. 19. 시행)됨에 따라,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신청에 필요한 분할복무 신청서 서식 및 분할복무 통지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
2. 그 밖에 분할복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③ 영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.

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전화번호		
	주소		
	복무기관	복무분야	
	소집일	소집해제예정일	
복무중단 신청기간	20 . . . ~ 20 . . . ()일간		
신청사유			
복무기관장 의견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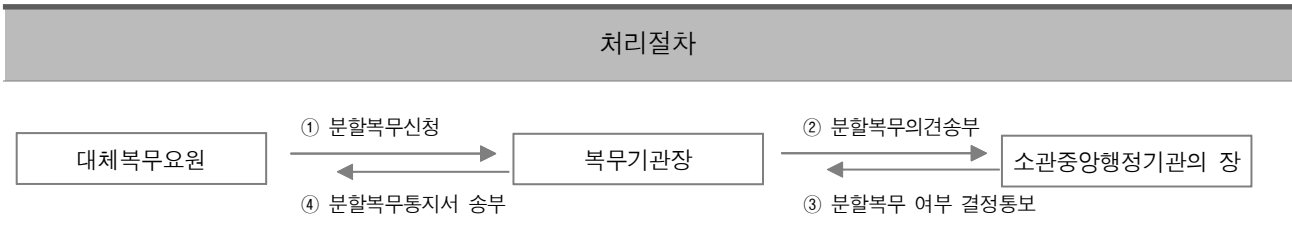
「대체역법 시행령」 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대 체 복 무 기 관 장 직인

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 2. 그 밖에 분할복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

인적사항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	복무기관	복무분야
통지내용	복무중단 기간	20 . . . ~ 20 . . . ()일간
	복무중단 사유	
	재복무일시(신고장소)	20 . . . 시 ()
	남은 복무기간	20 . . . ~ 20 . . . 까지

「대체역법 시행령」 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장

직인

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 수령증

인적사항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	복무기관	복무분야
통지내용	복무중단 기간	20 . . . ~ 20 . . . ()일간
	복무중단 사유	
	재복무일시(신고장소)	20 . . . 시 ()
	남은 복무기간	20 . . . ~ 20 . . . 까지

위와 같이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를 통지받았습니다.

일시 : 년 월 일 시 분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관계 : 전화번호 :

210mm×297mm[백상지 60g/㎡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4조(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대체복무요 원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대 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. 1.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 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 2. 그 밖에 분할복무 사유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영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 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다. 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<u><신 설></u>	
② (생 략)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인력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139
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42) 481 - 2641